

의정부지방법원 2016. 6. 9 선고 2015가단4065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중중

변론 종결 2016. 5. 12.

판결 선고 2016. 6. 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896㎡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

가. 피고는 남양주시 C 답 89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명의수탁자이다.

나.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친인 망 D의 소유였는데, 1975. 7. 5.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.

2.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망 D을 비롯하여 원고 등이 2013. 12. 18.경 피고 종중과 그 상위 종중인 E종중 등의 소유 토지로서, 망 D 앞으로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난 과오에 대하여 사과하며 차후 어떠한 종무라도 전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으므로,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 을 제8,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D, 원고 등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제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본안에 대한 판단

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 D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그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을 제3호증의 1, 2, 을 제4호증의 1, 2, 을 제5호증의 1, 2, 3, 을 제8,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6. 25 전쟁으로 멸실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8. 2. 12.소유자를 원고의 4대조 망 F로 하여 토지대장이 복구되었으나 1975. 5. 28. 오류정정에 의하여 소유자란이 피고 종중으로 정정 기재되었고, 1975. 7. 5.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,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 2008. 2.경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가장하여 소외 G에게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8. 3. 10.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, 그 후 피고 종중이 G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. 9. 16. 대표자가 아닌 망 D이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종중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, 이에 G이

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,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,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,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년경 피고의 위임에 따라 피고의 상위 종중인 H 종중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, 망 D과 원고 등은 2013.12. 18. 망 D 명의로 신탁된 피고 종중의 토지(김천시 I 소재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)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며 지난 과오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올리면서 피고 종중이 9,000만 원을 지급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, 망 D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회복 경위, 피고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종중원이 종중에게 토지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 종중소유의 다른 토지가 망 D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토지는 피고 종중의 소유로 보일 뿐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최성길